

◎ 환경부고시 제1995-23호

소비자보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한 후에 발생하는 폐물품의 재활용가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기 위한 재활용가능 표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년 2월 22일

환경부장관

재활용 가능 표시에 관한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폐자원의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이 재활용이 가능한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활용가능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현 여건에서 경제적·기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표시”라 함은 사용후 재활용가능폐기물로 되는 물품에 대하여 별표 2의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재활용 가능 표시 신청) ① 재활용가능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활용 가능 표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 표시를 하고자 하는 물품의 재질·성상에 관한 사항
2. 재활용 가능 표시를 하고자 하는 물품의 생산, 판매,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
3.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재활용 제품의 용도 등 소비실태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가능 표시 도안이 포함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가능 표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물품의 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품이 생산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가능 표시가 가능함을 통보받은 후 그 물품을 생산 즉시 제출할 수 있다.

제 4 조(신청서의 심사) ① 공사의 사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가능 표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조 제1항 각호의 내용에 의하여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을 위하여 공사의 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출장하여 확인하거나 재질·성상에 대한 공인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심사결과와 통보) ① 공사의 사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재활용 가능 표시가 가능함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제품의 판매가격 등 경제여건이 변하여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하고 재활용 가능 표시의 표기를 중지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표시 대상물품이 판매되는 지역중 재활용이 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을 때에는 그 지역에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재활용 가능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타 공사의 사장이 재활용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6 조(재활용가능 표시방법) ① 재활용가능표시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물품의 크기에 따라서 재활용 가능 표시의 위치 및 크기를 정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질분류 표시를 하고 있는 물품(금속캔, 합성수지용기)은 재질분류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능한 크게 표시하여 재질분류 표시 도안 밑에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재활용 가능 표시는 인쇄 등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공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 7 조(준수사항) 재활용 가능 표시를 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 8 조(표시의 사용금지) ① 재활용 가능 표시를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소비자가 재활용을 위한 분리 배출 등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 가능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

3. 기타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등에 증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경우에 재활용 가능 표시의 사용자에게 재활용 가능 표시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9조(보고) 공사의 사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가능 표시를 하도록 통보한 때에는 매달의 통보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활용 가능 표시대장) 공사의 사장은 제5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가능 표시의 사용을 통보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재활용 가능 표시대장을 비치·기록하여 사업자의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재활용 가능 폐기물(제2조제1호 관련)

###### 1. 종이류

가. 종이외의 복합재질로 구성되어 재활용에 지장을 주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만, 그 물품의 사용자, 재활용자 등이 이물질이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비닐코팅지, 감열기록지(FAX용지) 등 배출량이 적거나 재활용처리 작업이 곤란하여 경제성이 없는 물품은 제외한다.

###### 2. 고철류(비철금속 포함)

가. 철 또는 알루미늄외에 복합재질로 구성되어 재활용에 지장을 주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만, 그 물품의 사용자, 재활용자 등이 이물질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캔류, 공기구·철사·못·철판 등 쇠붙이와 양은·스테인레스스틸·구리·알루미늄 샷시류 등 비철금속을 포함한다.

###### 3. 유리병류

가. 유리외의 복합재질로 구성되어 재활용에 지장을 주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만, 그 물품의 사용자, 재활용자 등이 이물질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백색유리 등 배출량이 적거나 재활용처리 작

업이 곤란하여 경제성이 없는 물품은 제외한다.

#### 4. 합성수지류

가. 두 가지 이상의 복합재질로 구성되어 재활용에 지장을 주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만, 그 물품의 사용자, 재활용자 등이 이물질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질분류 표시를 하고 있는 PETE, HDPE, PVC, LDPE, PS, PP외의 재질로 된 물품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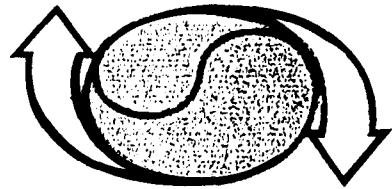
다. 전자기·소켓·냄비손잡이 등 열에 잘 녹지 아니하는 물품과 음·식료품의 포장지 등의 것으로 복합재질 또는 배출량이 적거나 재활용처리작업이 곤란하여 경제성이 없는 물품은 제외한다.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별표 2)

##### 재활용 가능 표시(제2조제2항 관련)

###### ○도안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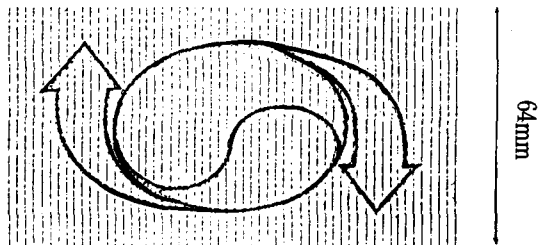
이 종이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종이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도안요령

###### Drawing 1



118mm

64mm

-색상은 위의 반원은 녹색과 아래반원은 청색으로 하거나, 전체를 백색바탕에 흑색선으로 할 수 있다.

-마크는 원본을 확대·축소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축소·확대가 불가능할 때에는 위 모듈에 의하여 작도한다.

-그림 밑의 글씨는 재활용제품을 정확히 알리는 문구로서 사용제품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 〈도안 설명〉

우주만물이 생긴 근원이라는 철학사상의 태극마크를 기초로 하며, 위의 반원은 육지를 의미하여 녹색으로 하고 아래의 반원은 바다를 의미하여 청색으로 한다. 주위의 원은 지구를 의미하고 중간의 곡선은 하천과 육지의 경계를 의미한다. 원 밖의 화살표시는 생태계의 상호순환과 재활용을 의미한다.

※ 따라서 전체의 의미는 지구생태계 보전을 위한 재활용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마크이다.

#### 〔별표 3〕

##### 재활용 가능 표시자의 준수사항(제7조 관련)

1. 재활용이 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판매하는 물품에 “재활용가능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재활용 가능 표시 물품이 유통되는 지역에서 경제성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활용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역에 판매하는 물품에 “재활용 가능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그 폐기물의 수거체계를 유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활용 가능 표시”를 한 물품을 판매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4. “재활용 가능 표시”물품에 대하여는 광고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 대통령령 제14,544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1995. 3.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유독물·특정유독물의 지정기준)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및 특정유독물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신고대상 화학물질)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다만, 당해 화학물질의 사용목적 또는 규모 등으로 보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은 이를 신고대상 화학물질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2. 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사실을 인정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3. 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를 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을 수록·등재한 화학물질목록을 발간하여 필요한 자가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제4호중 “한국화학연구소” 앞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삽입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3월”을 각각 “2월”로 한다.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영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의3(과징금의 납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

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4(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취약지구"로 한다.

제1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탄가스

제12조제1항중 "환경처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환경부장관·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중 "별표"를 "별표 3"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조품목등록을 "품목등록"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제조품목등록취소 및 제조정지명령"을 "품목등록취소와 제조 또는 수입정지명령"으로 하고, 동항제6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7호 내지 제14호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제14조제2항중 "별표"를 "별표 3"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유독물관리협회"를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실시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별표]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 (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행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 또는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의 행위로 본다.

③ (유해성 심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의 신고를 받아 유해성심사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유해성심사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유독물 및 특정유독물의 지정기준(제1조의2관련)

1. 실험동물에 대한 급성독성의 정도(LD<sub>50</sub>, LC<sub>50</sub>)에 따라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물질. 다만, 동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일상적인 사용빈도, 사용용도, 사용량 및 제품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험동물	급 성 독 성				
	설 치 류			어 류	
투여기준	경 구 (LD <sub>50</sub> )	경 피 (LD <sub>50</sub> )	흡 입 (LC <sub>50</sub> )		(LC <sub>50</sub> )
단위	mg/kg	mg/kg	ppm, 1시간	mg/l 공기 4시간, 1회	mg/l, 48시간
유 독 물	300이하	1,000이하	2,000이하	2이하	2이하
특정유독물	15이하	50이하	100이하	0.5이하	0.1이하

비고 : 1. LD<sub>50</sub>(Lethal Dose 50% Kill)이라 함은 실험동물에 경구 또는 경피 투여시 실험동물의 50%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의 양인 "반수치사량"을 말한다.

2. 설치류에 대한 LC<sub>50</sub>(Lethal Concentration 50% Kill)이라 함은 실험동물에 흡입투여시 실험동물의 50%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의 농도인 "반수치사농도"를 말한다.

3. 어류에 대한 LC<sub>50</sub>(Lethal Concentration 50% Kill)이라 함은 해당 시험물질의 수용액에 노출시 시험어류의 50%를 죽일 수 있는 농도인 "반수치사농도"를 말한다.

2. 제1호의 지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질중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기준(제9조의2제1항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조항	과징금금액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 등록된 종류의 유독물영업을 행한 경우 가. 유독물제조업자가 다른 유독물영업을 하는 경우 나. 유독물취급업자(사용)가 다른 유독물영업을 하는 경우	법 제 10조 제1항		1,500	3,000
2.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10조 제1항	500	1,500	3,000
3. 유독물영업자의 시설·장비 등 요건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가. 영업소·보관창고·저장시설의 면적이 각각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나. 영업소·실험시설·제조시설·보관창고·저장시설이 없는 경우 다. 환기시설·잠금장치·구획시설·표시사항이 없는 경우	법 제 10조 제3항		500	1,500
4. 유독물제조품목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12조 제1항	500	1,500	3,000
5. 유독물제조품목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12조 제2항	500	1,500	3,000
6. 등록된 성분 및 함유량과 다른 유독물을 제조한 경우 가. 3퍼센트 미만 나. 3퍼센트 이상 6퍼센트 미만 다. 6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 라. 15퍼센트 이상	법 제 12조 제3항		500	1,500
7.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금지된 특정유독물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	법 제 13조		1,500	3,000
8.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16조	500	1,500	3,000
9.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가. 1월 미만 나. 3월 미만	법 제 18조 제1항		500	1,500

위반행위	해당조항	과징금금액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다. 6월 미만 라. 6월 이상			1,500	3,000
10.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유독물관리자를 신고한 경우	법 제 18조 제1항	500	1,500	3,000
11. 유독물관리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 18조 제4항	500	1,500	3,000
12.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20조 제1항 및 제2항	500	1,500	3,000
13. 유독물취급이 금지된 자에게 판매하거나 공여한 경우	법 제 22조 제1항	500	1,500	3,000
14. 표시되지 아니한 유독물을 판매 또는 공급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경우	법 제 22조 제2항	500	1,500	3,000
15. 유독물을 부적절하게 폐기 처리한 경우	법 제 25조	500	1,500	3,000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1994. 8. 3, 법률 제4784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유독물 및 특정유독물의 지정기준을 정하되, 급성독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도록 함(영 제1조의2 및 별표 1)

나. 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실을 인정하여 고시한 화학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신고대상화학물질의 범위를 일부 조정함(영 제2조).

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금액기준 및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 4 및 별표 2)

라. 환각물질의 종류에 부탄가스를 추가함(영 제11조제3호).

마. 유독물수입품목의 등록과 과징금부과·징수업무를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영 제14조). <법제처 제공>

◎ 환경부고시 제1995-2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5조, 소음·진동규제법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7조, 폐기물관리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여 1995년도 환경관리인 등 법정교육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년 3월 4일

환경부장관

'95년도 환경관리인등법정교육수수료

과 정 명	교 육 기 간	수 수 료 (원)
환경관리인 전문관리인 과정	4일	49,600
환경관리인 일반관리자 과정	2일	24,800
폐기물배출자 과정	1일	12,400
일반폐기물처리자 및 기술관리인 과정	1일	12,400
일반폐기물재활용자 과정	1일	12,400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기술관리인 지정	2일	24,800
축산폐수정화시설 기술관리인 과정	2일	24,80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고시 제1995-26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유해성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년 3월 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결과

일련번호	화 학 물 질 명	심사결과
95-14	헥사메틸렌아민 Hexamethyleneimine (111-49-9)	-유독물에 해당안됨 ○ 피부 및 안구부식성 물질로 작업자가 취급 시에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95-15	클로로티오포름산 에틸 Ethyl chlorothioformate (2941-64-2)	-유독물에 해당안됨
95-16	2,2,3,3-테트라메틸시클로프로판카복시산 2,2,3,3-Tetramethylcyclopropane carboxylic acid (15641-58-4)	-유독물에 해당안됨
95-17	3,6-디히드록시-2,7-나프탈렌디술폰산 이나	-유독물에 해당안됨

일련번호	화 학 물 질 명	심사결과
	트롬염 3,6-Dihydroxy-2,7-naphthalenedisulfonic acid disodium salt (7153-21-1)	
95-18	[ $\mu$ -((2,2'-((1-메틸-1,2-에탄디일)비스(이미노(6-플루오로-1,3,5-트리아진-4,2-디일)이미노(2-히드록시-5-술포-3,1-페닐렌)아조(페닐메틸렌)아조))]비스(4-술포벤조산))(10-))]이구리산 나트륨 Sodium [ $\mu$ -((2,2'-((1-methyl-1,2-ethanediy) bis (imino (6-fluoro-1,3,5-triazine-4,2-diyl) imino (2-hydroxy-5-sulf-o-3,1-phenylene) azo (phenylmethylene) azo))] bis(4-sulfobenzoate))(10-))]dicuprate(6-) (155613-89-1)]	-유독물에 해당안됨
95-19	m-크레졸, 3,5-크실레놀과 포름알데히드의 중합물 m-Cresol-3,5-xyleneol-formaldehyde Novolak Resin	-유독물에 해당안됨
95-20	2,5-퓨란디온, 3,5-디메틸페놀, 포름알데히드와 3-메틸페놀의 중합체 2,5-Furandione polymer with 3,5-dimethylphenol, formaldehyde and 3-methylphenol.	-유독물에 해당안됨
95-21	2-아닐리노-5-(2-니트로-4-페닐술포모일)-아닐리노벤젠 술폰산 나트륨 sodium 2-anilino-5-(2-nitro-4-phenylsulphamoyl)-anilinobenzene sulphonate	-유독물에 해당안됨 ○ 안구자극성물질로 작업장에서 사용시 작업자에게 눈/안면보호구를 착용하여, 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95-22	테트라페닐붕산 N-(1,1,2-트리히드로퍼플루오로알켄-2-일)-N,N-디에틸-N-메틸암모늄 N-(1,1,2-Trihydroperfluoroalken-2-yl)-N,N-diethyl-N-methylammonium tetraphenylborate (145477-02-7)	-유독물에 해당안됨
95-23	( $\eta^5$ -2,4-시클로펜타디엔-1-일)((1,2,3,4,5,6- $\eta$ )-(1-메틸에틸)벤젠)철(1+) 헥사플루오르인산(1-) ( $\eta^5$ -2,4-Cyclopentadiene-1-yl)((1,2,3,4,5,6- $\eta$ )-(1-methylethyl)benzene)iron(1+) hexafluorophosphate(1-) (32760-80-8)	-유독물에 해당안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고시 제1995-27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91-43호)에 관한 업적 및 특별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5년 3월 6일

환경부장관

제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동 별표의 제1호중 일산화탄소란의 나목·다목 및 라목 배출시설, 염소란의 가목 배출시설, 황산화물란의 가목(2) 및 나목(1)·(2) 배출시설 질소산화물란의 나목 배출시설, 제2호중 먼지란의 마목 및 아목(3)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가스상물질

오염물질	배출 시설	특별배출허용기준
일산화탄소	나.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400(12)PPM이하
	다. 시멘트제조시설중 소성로 라. 기타시설	400(12)PPM이하 400PPM이하
염 소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50(12)PPM이하
황산화물 (SO <sub>2</sub> 로서)	가. 일반보일러	100(6)PPM이하 200(6)PPM이하 250(6)PPM이하 270(4)PPM이하 100(6)PPM이하 200(6)PPM이하 270(6)PPM이하
	(2)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가) 석탄연료 사용시설	
	1) 굴뚝높이 100m 이상시설 2) 굴뚝높이 150m 이상시설	
	(나)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나. 발전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설비용량 100MW미만의 열병합발전시설	
(2)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가) 석탄연료 사용시설		
1) 굴뚝높이 100m 이상시설 2) 굴뚝높이 150m 이상시설 (나)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질소산화물 (NO <sub>2</sub> 로서)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250(6)PPM이하

비고 : 1.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sub>2</sub>의 %)를 말한다.

2. 입자상물질

오염물질	배출 시설	특별배출허용기준
먼 지	마.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중 간접 가열시설	50(4)mg / Sm <sup>3</sup> 이하
	아. 석유정제시설중	50(4)mg / Sm <sup>3</sup> 이하
	(3) 간접 가열시설	

비고 : 1.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sub>2</sub>의 %)를 말한다.

(별표 1)중 제2호에 다음을 신설한다.

2. 입자상물질

오염물질	배출 시설	적용 기간
		1995년 5월 1일 이후
먼 지	가.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중 간접가열시설	50(4)mg / Sm <sup>3</sup> 이하
	나. 석유정제시설중 간접가열시설	50(4)mg / Sm <sup>3</sup> 이하

비고 : 1.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sub>2</sub>의 %)를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령 제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95년 3월 7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나목의 중량자동차란중 “1996년 1월 1일 부터 1999년 12월 31일”를 “1996년 1월 1일 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동란중 “2000년 1월 1일 이후”를 “2000년 1월 1일 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6 나목의 중량자동차란중 1996년 1월 1일 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란(중전의 1996년 1월 1일 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란) 다음에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96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4.9g / KWH 이하	6.0(0.0)g / KWH 이하	1.2g / KWH 이하	0.25(0.5)g / KWH	25% 이하	D-13모드
-------------------------------	---------------	--------------------	---------------	------------------	--------	--------

별표 16 나목의 중량자동차란중 2000년 1월 1일 부터 2001년 12월 31일 까지란(중전의 2000년 1월 1일 이후란) 다음에 2002년 1월 1일 이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4.9g / KWH 이하	6.0g / KWH 이하	1.2g / KWH 이하	0.15(0.1)g / KWH	25% 이하	D-13모드
----------------	---------------	---------------	---------------	------------------	--------	--------

별표 16 나목의 비고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의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환경관리인. 1995. 4

5. 소형화물자동차의 입자상물질란중 ( )안의 기준은 차량총중량 2톤 이하의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한다.

6. 중량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란중 ( )안의 기준은 시내버스에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신규인증 경유사용중량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중량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개발에 착수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개발착수 근거자료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인증되는 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적용한다.

③ (변경인증 경유사용중량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에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된 경유사용중량자동차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변경 인증되는 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적용한다.

◇ 개정이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등 3톤 이상의 중량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경유를 사용하는 중량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경유를 사용하는 중량자동차에 대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함(별표 16 나목).

나. 경유를 사용하는 중량자동차에 대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함(별표 16 나목). <환경부 제공>

◎ 환경부고시 제1995-30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유독물)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독물을 지정 고시합니다.

1995년 3월 13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지정

지정번호	화 학 물 질 명
470	트리페닐 포스핀 (triphenyl phosphine) [603-35-0]
471	엠 아미노클로로 벤젠 m-Aminochloro benzene [108-42-9]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의 등록 및 품목의 등록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환경부고시 제1995-31호

1995년도 재활용시설 및 재활용기술개발에 지원되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년 3월 17일 환경부장관

1995년도 재활용산업 육성 자금 지원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시설 및 재활용기술개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적용범위

재활용시설 및 재활용기술 개발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융자업무수행기관인 한국자원재생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별도로 정한 세부지침에 의함.

3. 융자사업내역

가. 융자금액

사 업 분 야	융 자 액
계	150억원
재활용시설분야	130억원
재활용기술개발분야	20억원



## 나. 용자지원대상자

사업분야	용자대상자	관련법규
재활용시설분야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 제품을 제조·가공·수집·운반·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을 설치하는 자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압축·파쇄·용융 등 중간가공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자 -폐기물을 원료·재료·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신고를 한 자	○법 제2조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재활용기술개발분야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비·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자 -자원재활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법 제2조제8호, 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다. 우선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1) 용자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게 우선 지원 함.

-제조 또는 수입한 예치금·부담금대상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재활용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예치금·부담금 납부자

-폐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재활용제품(중간가공품 포함)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자

-예치금대상 폐기물을 회수·처리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구성된 사업자단체 또는 동단체와 회수·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환경부 또는 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은 용자지원대상자

-환경마크를 획득한 재활용사업자

2) 지원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함.

-다른 자금의 용자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자금지원추천을 받은 자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소속 기업

-기타 자금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4. 용자조건

사업별	대출금리	대출기간	지원한도 및 비율	상환방법
재활용시설분야	연 7%	10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제조시설: 5억원 이하 -중간가공시설(수집·운반장비): 3억원 이하 (1억원 이하)(소요자금의 90% 이내)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마다 균등분할 상환
재활용기술개발분야	연 5%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1억원 이하 (소요연구자금의 100% 이내)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마다 균등분할상환

## 5. 용자범위

사업별	자금용도
재활용시설분야	재활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자금
재활용기술개발분야	기술개발추진에 필요한 연구용 및 시제품 제작용 기계장치, 기자재구입비와 소요운전 자금

## 6. 용자취급 금융기관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7. 용자승인신청기간 및 용자승인신청

가. 용자승인신청기간은 용자공고일(시행일)로부터 해당 자금 소진시(승인완료)까지로 함.

나.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소정양식의 용자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공사로 용자신청을 하여야 함.

## 8. 용자승인 및 대출금 지급

가. 용자지원여부 및 용자승인금액의 결정은 매월 별로 용자신청을 마감하여 용자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하여 결정함. 다만, 자금지원지침 고시 해당월의 용자신청분은 익월 신청분과 함께 심의하며 또한 재활용기술개발분야는 신청접수건수를 감안하여 분기별로 마감하여 심의할 수 있다.

나. 용자신청일이전 2년 이내에 재활용산업육성자금(중전 폐기물관리기금)에서 지원받는 시설자금은 용자한도액에 포함하며, 재활용기술개발지원자금은 장기간 연구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음.

다. 공사는 용자대상자의 용자포기분 및 인출기간 경과분 등을 30% 범위내에서 초과용자 승인을 할 수 있음.

라. 공사는 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용자승인내용에 용자자금에 대한 최초인출기간을 명시하

여 신청자와 용자취급금용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마. 용자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서에 명시된 최초인출기간내에 해당 용자취급금용기관으로부터 인출하여야 함.

바. 용자취급금용기간은 용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 또는 제작현장이나 용역제공 등을 확인하고 사업진도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승인자금의 10% 범위내에서 계약금 또는 선금급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사. 용자취급금용기관은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 차주로부터 지급위임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다만, 차주가 재화 또는 용역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 금액 범위내에서 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음.

아. 당해년도 소요자금으로 용자승인된 자금은 최초인출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전액인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동기간내에 인출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2개월 범위내에서 잔액인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자. 용자대상자는 사업시행중 당초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의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또한 용자승인금액대비 총 소요금액이 30% 이상 감액되는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 9. 용자승인 취소 및 용자승인신청 제한

가. 공사로부터 용자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승인서에 명시된 최초인출기간내에 용자취급금용기관으로부터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용자승인이 자동취소됨.

나. 용자취급금용기관으로부터 용자금을 대출받은 사업자가 최초인출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연장된 잔액인출기간내에 인출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미인출 잔액에 대하여 용자승인이 자동취소됨.

다. 용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용자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용자승인이 자동취소됨.

라. 용자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자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자심사일 이전에 용자신청을 철회하여야 하며, 심사일 이후에 철회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봄. 다만 예비사업자가 정순위 사업자로 승인되기 전에 예비사업자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용자승인이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용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용자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자는 공사가 인정할 만한 별도의 보완조치 없이 동일건으로 당해연도에는 용자신청을 할 수 없음. 다만, 용자금을 용자승인신청서의 사업계획이 아닌 타목적에 유용함으로써 용자승인이 취소되어 용자원리금이 회수된 사업자는 회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공사에 용자신청을 할 수 없음.

#### 10. 사후관리

가. 용자취급금용기관은 용자대상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용자금이 당초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나. 용자취급금용기관은 용자금이 타목적에 유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유용된 용자원리금을 회수하여 공사에 상환하여야 함.

다. 용자취급금용기관은 “나”항에 의하여 유용된 용자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용자금 유용시부터 회수일까지 용자금잔액에 대하여 당해 용자취급금용기관의 최고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징수하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 11. 사업성과 평가

가. 공사는 사업이 완료된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의 사업완료 보고서와 출장조사를 통하여 사업완료결과를 확인·평가함.

나. 공사는 사업이 완료된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2년간 매년 사업자로부터 사업결과의 효과 및 애로사항 등을 보고받아 분석·관리함.

다. 공사는 용자승인신청 및 용자사업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용자취급금용기관 또는 용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용자취급금용기관 및 용자대상자는 공사의 실태조사 또는 기술지도시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함.

#### 12. 보고

가. 용자금을 받아 사업을 완료한 사업자는 공사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완료 상황 등을 공사에 보고하여야 함.

1) 사업완료보고 : 사업완료시(사업완료일부 15일 이내 보고)

2) 사업성과보고 : 사업완료 후 2년간 년1회(결산일로부터 15일 이내 보고)

나. 용자취급기관은 분기별로 용자금 대출내역에

# 자연과 환경보호를 위한 표어공모

본 연합회에서는 제23회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이하여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환경의식을 고취한다는 취지아래 제5회 자연과 환경보호를 위한 표어를 공모하오니, 뜻있는 환경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대 상 : 전국의 모든 환경인
- 심 사 : 본 연합회 고문단
- 공모마감 : 1995년 5월 10일 限(10일 字 소인 유효)
- 보내실곳 : 서울 구로구 구로5동 40-13
-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 시상일자 : 1995년 6월 1일(목)
- 시상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보 협력업체 명단 ◆

- |                   |                      |                     |
|-------------------|----------------------|---------------------|
| ○(주)강남정공(필터백)     | ○(주)삼천리(방지사설업)       | ○제일산업(주)(소각로)       |
| ○(주)그린기술산업(방지사설업) | ○서울엔지니어링(전기집진기)      | ○조양기술개발(주)(소각로)     |
| ○남경어드밴스(주)(산화장치)  | ○송원산업(주)(용집제)        | ○진도종합건설(주)(소각로)     |
| ○대성 GKG(주)(소각로)   | ○씨스텍엔지니어링(환경기기)      | ○천세산업(주)(계측기/전극봉)   |
| ○대양상사(계측기류)       | ○(주)안국양행(중금속포집제)     | ○청산화학(주)(소포제동)      |
| ○대진엔지니어링(탈수기)     | ○엔바트로닉스(주)(유량계)      | ○(주)키스트엔지니어링(수처리기기) |
| ○동광환경(주)(방지사설업)   | ○영일화학공업(주)(중금속포집제)   | ○키위마케팅(탈수기류)        |
| ○동아계측기기(탈수기/계측기)  | ○원엔지니어링(주)(소각로)      | ○태기공업(주)(방지사설업)     |
| ○동양기전(주)(퇴비화장치)   | ○(주)유공(계측기)          | ○한국듀폰(필터)           |
| ○동양물산(주)(퇴비화건조기)  | ○유공유체산업(주)(여과포)      | ○한국바스텍(용집제주입장치)     |
| ○동양화학(주)(방지사설업)   | ○유니슨산업(주)(집진기/필터)    | ○(주)한국EP(집진기)       |
| ○럭키디씨실리콘(주)(소포제)  | ○(주)유니온(여과기)         | ○한미브로와(블로워)         |
| ○LINCOLN(오일흡착제)   | ○유성기연(주)(필터)         | ○한성엔지니어링(방지사설업)     |
| ○바투엔지니어링(흡착제)     | ○유천엔바이로(필터류)         | ○한솔화학(주)(용집제)       |
| ○(주)보명플랜트(방지사설업)  | ○이삭환경(방지사설업)         | ○(주)한수(수처리약품)       |
| ○블루웨이스크린(스크린제작)   | ○이양화학(주)(미생물처리제/용집제) | ○호정엔지니어링(탈수기)       |
| ○삼산코리아(펌프/계측기)    | ○일진환경개발(탈수기)         |                     |
| ○(주)삼성칸트(약품)      | ○(주)정엔지니어링(TMS/계측기)  |                     |

(가나다순)

대하여 공사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기완료 후 15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13. 기타

이 고시에 관한 문의는 환경부 폐기물재활용과(504-9262) 또는 한국자원재생공사 산업지원과(785-

1062, 786-1107, 780-9456)로 하시기 바랍니다.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